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5억원
- 지출액 : 4억 9천 9백 8십 9만원
- 이월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 11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1%가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계		500,000	499,887	499,887	0	113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사무관리비	500,000	499,887	499,887	0	113

II.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여성안심물품 지원’을 위한 1건으로,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99.9%를 지출하고, 11만원을 불용처리(불용률 0.1%) 하였음.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결정일자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	사무관리비	500,000,000	499,887,000	113,000	2023.10.26.

사업 개요

- 사업명 : 여성안심물품 지원
- 사업기간 : '23. 10월 ~ '24. 1월
- 지급대상 :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 구매물품 : 휴대용 비상벨 및 경보기 2만여개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안심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3.10. 참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편성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내역
여성청소년 보호및지원 (사무관리비)	500,000	499,887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비상벨 구매(10,000개) : 390,060천원 ▶ 휴대용경보기 구매(10,000개) : 69,588천원 ▶ 지킴이 보급상자 제작(10,000개) : 18,779천원 ▶ 지킴이세트 포장(10,000개) : 8,800천원 ▶ 지킴이 지급 쇼핑백 구매 : 3,000천원 ▶ 지킴이 사용설명서 제작(10,000장) : 660천원 ▶ 맞춤형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 9,000천원

-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 등 사회적 재난에 이를 정도의 범죄 발생, 자기 보호력이 약한 대상자에게 호신물품 지원을 위해 긴급히 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하였다고 하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동기범죄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으나 자기 보호력이 약한 대상자에게 호신물품 지원의 필요성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지, 선제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또한, ‘여성안심물품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26일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고, ‘안심 경보기 구매(2023.11.24.)’과 ‘휴대용 비상벨 구매(2023.12.8.)’ 계약은 11월과 12월이며, 안심물품 신청 및 지원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경찰서 자체 배부 2,250개, 온라인 접수 배부 6,342개 등 총 8,592세트(2024.5.28.기준)가 배부되었음.

〈 안심물품 지키미(ME) 물품 지급 현황 〉

(기준 2024.5.28.)

구분	수량(개)	배부(합계)	배부율(%)	경찰서 자체 배부	서울시 온라인 접수 배부	
					1차	2차
합계	10,000	8,592	85.9	2,250	4,408	1,934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이상동기범죄로 인한 안심물품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¹⁾을 통해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고, 본 사업의 예산집행 일정, 배부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긴급성이 있는 사항은 예비비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전액 2023년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예산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비비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여성안심물품 지원’ 추진 경위 〉

○ 추진경위

- ‘23.09.05 : (1부시장) 여성범죄예방 관련 현안회의
- ‘23.09.11 : (기조실장) 여성안심 휴대용 비상벨 지원방안 회의
- ‘23.10.18 : (시장) 여성안심 휴대용 비상벨 지원계획 보고
- ‘23.10.26 : (예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
- ‘23.10.26 : (자경위)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여성안심물품 선정
- ‘23.11.03 : (자경위) 안심물품 계약 의뢰
- ‘23.11.24 : (재무과) 휴대용 경보기 구매계약 체결
- ‘23.11.30 : (서울청) 지키미 보급 관련 서울시-서울청 업무협약
- ‘23.12.08 : (재무과) 휴대용 비상벨 구매계약 체결
- ‘23.12.28 : 안심물품 인터넷 신청 접수 및 현장(서울청 및 31개경찰서 등) 지급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65번,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4월 15일 제출자료 참조.

- 또한, 예비비 상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맞춤형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9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878), 제안일 2023년 5월 30일.

-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의 조정은 해당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심의·의결 없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연구용역을 예비비 사용을 통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